

2024년 「경상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공고

경상남도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취·창업하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13일

경상남도지사

I. 사업개요

○ (사업명) 2024년 경상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사업내용)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

* (인구감소지역)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 (모집대상)

가. (지역우수인재) 250명 (특정국가의 국민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음)

-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요건을 갖추고, 경상남도지사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나. (지역특화동포 유형) 제한없음

-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 경상남도지사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II. 자격요건

1 지역우수인재

1. 대상 : 국내에서 합법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변경 제한기간 및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12)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2. 기본요건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2) 소득

- (소득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소득 금액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나. 거주지

- (원칙)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거주 예정이 확인되는 자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아래 유형 적용 가능 (단, 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 거주·취업 세부 유형 】

- 유형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 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제공 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기초지자체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위반
 -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허용지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 (업종) 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
-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추천지역 내 또는 경상남도 소재
- (근로계약)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 허용)
-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상 내국인 고용인원*의 50%(최대20명)까지 허용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창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에 취·창업 가능
 - ※ 취·창업하려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업종에 한하며, 사업장의 휴·폐업, 인권침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업종 변경 가능
 - 허가 기간 중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창업상태이어야 함

○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경상남도 지정업종으로만 변경 가능
- 2년 경과 시 경상남도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 가능 (사업지역에서 정한 업종에 한함)

라. 품행단정

- 국·내외 법령 위반 사례가 없을 것(법무부 내부기준으로 정함)

마.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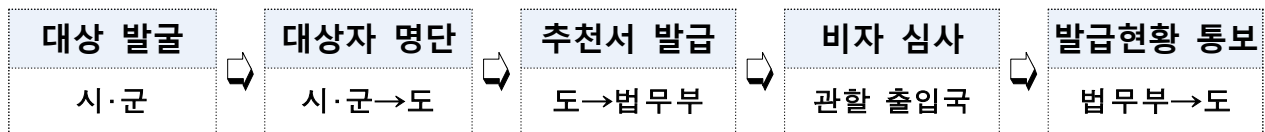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으로 강화(25~)
- (개별요건) : 거창군 한국승강기대학교 졸업(예정)자만 적용
 - 거창군 한국승강기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한국어능력 4급 이상
- (제출서류) 총9종 *순서대로 편철, 지자체 추천서 발급 후 비자전환신청

① 여권,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 ② 거주지 입증서류 (예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③ 학력 입증서류 (예시: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소득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창업자 :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⑥ 기본소양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 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배정 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⑨ 경남도지사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유효함)

* 신청서 작성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하여 **업종코드** 반드시 기입할 것
 ※ 확인방법 :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 추천 절차



- (명단 제출) 시군으로부터 신청받은 대상에 대해 도에서 추천서 발급 후 법무부로 일괄 제출
- (비자 심사) 관할 출입국에서 비자 및 비자 발급(법무부 소관)

②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1.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12) 국가 限)

【 구체적 판단 기준 】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③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부와 협의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 재외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 (추천 필요)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고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2. 제출서류 : 총4종

○ 지자체 추천신청서(붙임1), 여권 사본 1부,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거주지 입증서류 (예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지역특화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필요시)

3. 심사 기준

○ (허가조건)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동반가족과 추천지역 거주

① 국내·외 전입자 요건으로 동포 1인 先이주 후 가족 순차 이주하는 경우, 2인 이상 가족 이주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 필요

② 자격변경 후 최초 “2년”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③ 허가조건은 지역특화동포(F-4-R)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만약 (1) 본인 또는 가족이 비추천지역으로 진출하거나 (2) 공부상 거소는 추천지역에 두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비추천지역에서 하는 경우 (3) 경제활동을 다른 광역지역에서 하는 경우 등은 허가조건 위반으로 자격취소, 기간연장 억제

○ (제한기준) 결핵,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제한, 그 밖의 사유는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기준 준용

4. 허가기간

○ 최초 연장 시 1년 부여, 추천지역 거주 2년 경과 시* 3년 이내 부여

*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장 허가 신청일까지 실거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일로부터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다만, 가족 순차 이주 조건으로 1인이 먼저 지역특화동포 체류자격변경을 허가 받았으나, 허가기간 내에 동반가족이 이주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 연장(2차 연장 신청 시에도 가족 미이주시 연장 불허)

※ 가족 동반 요건 미충족 기간은 지역특화동포 허가 조건 및 지역동포영주(F-5-6R) 자격변경 요건에 산입하지 않음

5. 취업활동 지역

○ (광역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으로 사범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취소 등

【 취업 제한범위 비교 】

구 분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1. 단순노무행위	제한(고시 39개)	모두 허용
2.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제1~3호)	제한	제한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	제한(고시 8개)	모두 허용

Ⅲ. 관련사항

1. **(비자전환신청)** 비자전환을 원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붙임4)에 서류 접수를 하여야 함
 ※ 경남도지사 추천서(붙임1) 취득 후 해당 출입국관서에 신청해야 함
2. **(공고기간)** '24. 3. 13.(수) ~ 마감시까지
3. **(접수기간)** '24. 3. 13.(수) ~ 마감시까지
 ※ 연내에 비자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4. 9. 30.까지 추천서 발급(예정)
4. **(제 출 처)** 지역특화형비자 담당부서(붙임4)
5. **(거주지관리)** 우수인재의 경우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 실거주, 2년 경과 시(경상남도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 허용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외국국적동포는 계속해서 추천지역 실거주** ※ (유의) 거주지 조건·제한 위반시 체류자격 취소 및 출국조치됨
6. **(문의사항)** 경상남도 인력지원과 외국인인력팀 (☎055-211-3394)

Ⅳ. 기타사항

1. 본 공고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름
2. 비자전환승인은 법무부 및 출입국관서의 소관업무로 경상남도는 비자

전환에 따른 도지사 추천서 발급 업무를 수행함

3.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 중복지원 발견시 허가취소 및 당해연도 접수가 제한되므로 확인 바라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불이익 및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귀속됨

- 붙임
1. 경상남도 지역특화형비자추천 신청서 1부.
 2.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위임장 1부.
 3.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1부.
 4. 경상남도 지역특화형 비자담당 부서 및 연락처 1부.
 5. 경상남도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취업허용업종 1부.
 6.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비교표 1부.
 7. 준법시민교육 안내사항 1부.
 8. 지역특화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1부.
 9.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1부.
 10. 취업제한분야 1부.
 11. 수령증 1부.
 12.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1부. 끝.

【붙임 1】 지역특화형비자 추천 신청서

경상남도 지역특화형비자 추천 신청서

(1쪽)

신청유형	① 지역우수인재 ()	② 지역특화동포 ()
------	--------------	--------------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① 주소(*) (우편번호 :) (현거주지)				
	②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받음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받음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② 국 적[]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졸업(예정) []재학 []수료 []휴학 []중퇴 []검정고시 []독학사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년 월 취득)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4단계 []5단계 []기타()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점수	
	[]상 []중 []하		급(점)	
	[]상 []중 []하		급(점)	
그 밖의 특이사항				

210mm×297mm[보존용지(2종)70g/㎡]

(2쪽)

희망 취업 조건 (필요시)	우선 순위	희망직종	희망입사형태(※)	경력	희망직무내용
	1		[]신입 []경력	년 개월	
	2		[]신입 []경력	년 개월	
	3		[]신입 []경력	년 개월	
	고용형태(※) (복수응답가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파견근로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연봉	년 ()만원 이상		
		[]월급	월 평균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일급	일당 ()원 이상		
		[]시급	시간당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시간, 기숙사·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공공기관 제공 동의 []민간기관 제공 동의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추가첨부서류 : 보유자격 기입 시 자격증 사본 첨부

※ 파란글씨 지역우수인재기재사항

【붙임 2】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위임장

위 임 장

위임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수임인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4 . .

위임인 성 명 : (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 귀하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추천기관	경상남도 (00시·군)	대상	지역우수인재 () 외국국적동포/가족 ()
인적 사항			
성 명		발급번호	
생년월일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광역지역		추천지역	
상세 주소			
취업/창업 (※ 지역우수인재만 작성)			
유형	A B	허용업종	
회사명		업종 코드	
소재지		연락처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비자 발급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		경상남도 (직 인)	

【붙임 4】 경상남도 지역특화형비자 담당부서 및 연락처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부서

시·군	부서	연락처	관할출입국
경상남도	인력지원과	055-211-3394	*관할출입국 예약신청방문
밀양시	투자유치과	055-359-5839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055-344-7830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23	
함안군	행정과	055-580-2106	창원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창녕군	행정과	055-530-1207	055-279-8024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055-670-2703	
남해군	경제과	055-860-3233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하동군	경제기업과	055-880-2192	사천출장소 055-835-3988
산청군	행정과	055-970-6105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22	창원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거창군	인구교육과	055-940-8882	055-279-8024
합천군	행정과	055-930-3067	

【붙임 5】 취업허용업종

2024년 경상남도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취업허용업종

○ 지역우수인재 허용업종

추천지역		업종
경남	거창군	농업(01), 어업(03)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섬유제품
	고성군	제조업: 의복제외(1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화학물질
	남해군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밀양시	제조업(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산청군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의령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창녕군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하동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31),
	함안군	가구제조업(32), 출판업(58), 연구 개발업(70), 건축기술,
	함양군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보건업(86),
합천군	사회복지서비스업(87)	

○ 지역우수인재 취업가능지역 : 경상남도 18개 시·군 전역(유형 A, B선택)

【 거주·취업 세부 유형 】

- 유형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해당업종만 취업이 가능하며,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 추천을 받아 업종 및 근무처 변경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허위 업종 간 변경만 가능

- 예 10. 식료품 제조업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O)
- 11. 음료 제조업 : 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 112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및 얼음 제조업(O)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제조업 (X)

※ 한국표준산업분류 56.음식업 및 주점업 중 56211. 일반유희주점업 및 56212. 무도유희주점업 제외

【붙임 6】 유형별 비교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비교표

	지역 우수인재	외국국적동포
대상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 (자격변경 제한* 대상 제외) *기술연수(D-3),일반연수(D-4),호텔유흥(E-6-2),계절근로(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기타(G-1),관광취업(H-1)	국내외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
주요 요건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3급 이상	① 기존 2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추천지역 이주
거주지 제한	2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동반가족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허용 (배우자 및 자녀)
취업 가능 업종	법무부·지자체 지정 업종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사업지역에 취업 가능) ※ 단, 최초 허가받은 업종에 한함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가족 취업	취업 가능(배우자) - 지역제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가능(배우자) - 지역제한, 단순노무 분야
자녀 취학	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	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

【붙임 7】 준법시민교육 안내사항

준법시민교육 안내문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범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1)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교육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 1) 과거 “준법시민교육” 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범위반 사실이 없는 자
-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범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 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1):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1) 영주(거주)·거주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지침 변경시 그에 따름

[붙임 8] 지역특화동포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Declaration Form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가족 대표 Family Representative	성명 Name In Full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주소 Address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동반가족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Accompanying Family Members	관계 Relationship	성명 Name In Full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국적 Nationality	체류자격 Status of Stay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안내]

1.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2. 가족대표 지정 기준

- 지역특화 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임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F-3-2R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 구성원 모두가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및 그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고 허가된 지역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uide to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1. Families Required to Re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Those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embers in the family will move to and reside in the region

2. Criteria to Designate a Family Representative

-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nationals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and family of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3-2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 Families all of whose members are foreign nationals holding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family memb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3. Note

Overseas Koreans and the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two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live in the region should actually reside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mmended local government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moving-in and income earning activities are only allowed in certain areas where such activities are available. Violations of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an lead to **a disposition of notice and cancellation of the status of sta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가족대표) Applicant (Family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경상남도지사 귀하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1. 지역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서 계속 취업 활동을 해야 함(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 2년 경과 후부터는 동일 업종에 한정하여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근무처 변경 가능

2. 지역우수인재의 동반가족(F-3-1R) 체류자격 소지자

- 5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가능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주 체류자와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거주 필요
- 주체류자격(F-2-R) 소지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

3. 지역특화동포(F-4-R) 및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소지자

- 자격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실거주할 것
 - 취업, 창업, 학업도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가능

취업 제한 분야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 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 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1. 11. 1.]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일부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 11. 1